KOSHA GUIDE

M - 96 - 2012

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6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ㅇ 개정자 :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경과

- 1993년 9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3년 10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5년 9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6년 4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5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1년 6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영국 MTTA 코드
- 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2절(공작기계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 월 20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 장 제2절 공작기계의 규정에 의거 금속가공용 선반(이하 "선반"이라 한다)에 의 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금속가공용 수동 및 자동선반에 대하여 적용된다. 다만,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및 선반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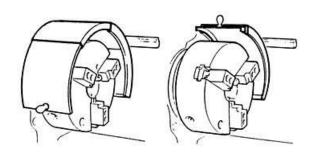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- (가) "자동선반"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 운동 및 기능이 자동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반을 말한다.
 - (나) "수동선반"이라 함은 공구이송 및 공작물 파지장치가 수동으로 조작되는 선반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동으로 조작되는 모방장치 등을 포함하다.

M - 96 -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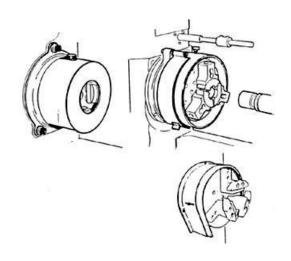
- (다) "공작영역"이라 함은 공구가 절삭작업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 여기에는 공구가 공작물과 접촉해 있거나 절삭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접근하는 점을 포함하며 터릿선반에서와 같이 작업이이루어지지 않는 공구가 있는 부위는 제외된다.
- (라) "고정가드"라 함은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 또는 개방할 수 없으며 운동부위가 없는 가드를 말한다.
- (마) "유지가드"라 함은 미닫이 또는 여닫이 형태로 중력이나 수동조작으로 확실하게 잠겨지며, 기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할 수 없는 가드를 말한다.
- (바) "탈착가드"라 함은 작업장 바닥이나 기계 위에 자유롭게 세워둘 수 있는 가드를 말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쉽게 제거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.
- (사) "방책형가드"라 함은 위험지역에 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충분한 높이의 담장형 가드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수동선반

- 4.1 수동선반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
 - (1) 공작물 파지장치는 <그림 1>, <그림 2>와 같이 회전중에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방호되어 있어야 한다.
 - (2) 가드는 선반의 주축대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형태이어야 한다.



<그림 1> 망원경식 척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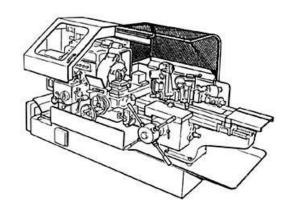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2> 고정식 척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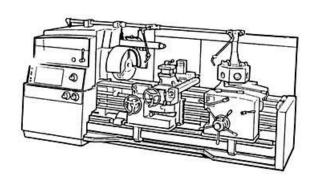
- (3) 작업자가 위치를 정할 수 있거나 새들에 고정되어 공구와 같이 이동 하면서 작업점과 공작물 파지장치를 방호하는 연동 가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(4) 선반의 공급자는 사용자가 특별히 주문한 공작물 파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반의 크기와 형태에 따른 적당한 공작물 파지장치를 제공한다.

4.2 수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

- (1) 공작영역의 가드는 파손된 공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.
- (2) 선반의 뒷부분에는 <그림 3>,<그림 4>와 같이 칩 등의 비산이나 공작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와 높이의 고정식 또는 탈착식의가드가 제공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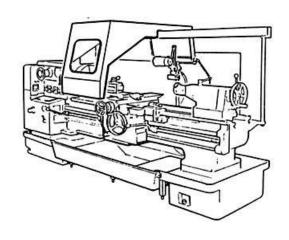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3> 선반 뒷면의 충분한 길이의 고정가드
(주: 절삭유나 냉각제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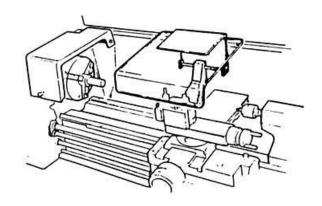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4> 선반 뒷면의 전부를 방호하는 고정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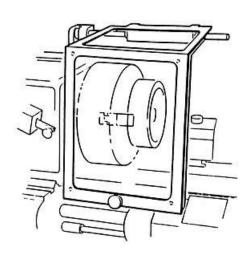
(3) <그림 5>, <그림 6>, <그림 7>과 같이 선반의 절삭점 앞면 및 윗면을 방호할 수 있도록 왕복대 등에 부착시키거나, 작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고정가드 또는 유지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. 이를 설계할 때는 작업자가 작업점을 볼 수 있고 기계의 조작이 쉽도록 한다.



<그림 5> 공작영역의 유지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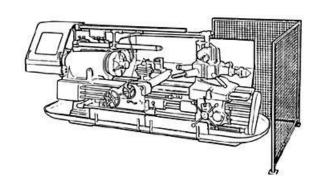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6> 작업영역 방호를 위하여 새들에 부착된 유지가드의 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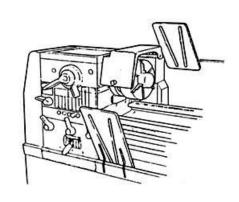
<그림 7> 작업영역 방호를 위하여 주축대에 부착된 유지가드의 예

(4) 공작물이 너무 크거나, 센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여 위의 방법이 적합치 않을 때에는 <그림 8>과 같이 방책형 가드 등과 같은 방호조치를 한다.



<그림 8> 선반 밖으로 튀어나온 공구 방호를 위한 방책형 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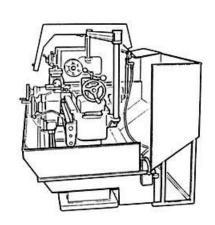
- (5) 냉각제나 절삭유를 사용할 때에는 <그림 9>와 같이 공작영역 방호가드와 일체로 되어 있거나 방호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기름받이 판으로 냉각제 등이 근로자에게 튀지 않도록 방호한다.
 - 이 경우 기름받이 판은 기계나 가드를 쉽게 청소 할 수 있고 냉각제나 절삭유가 기계 측으로 들어가도록 한다.



<그림 9> 탈착식 기름받이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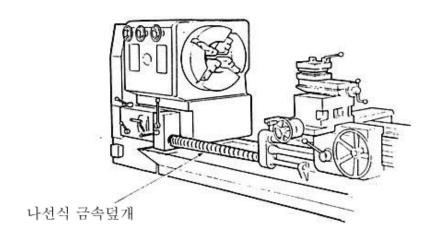
4.3 리드 스크루 및 이송축

(1) 리드 스크루나 이송축이 베드나 새들 또는 칩 받이에 의하여 방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그림 10>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방호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0> 리드 스크루 및 이송축 방호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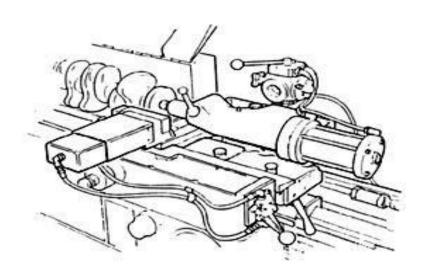
- (주) 리드 스크루나 이송축이 베드나 새들 또는 칩 받이에 의해 방호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방호가 필요없음.
- (2) 슬라이딩 베드 선반의 이송축이 노출된 경우에는 <그림 11>등의 방법에 따라 방호한다.



<그림 11> 베드 이송축의 망원경식 방호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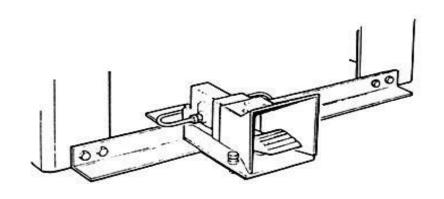
4.4 심압대

(1) 심압대 센터를 동력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유압장치의 고장 등의 동력 이 상이 있을 경우 <그림 12>와 같이 센터가 후진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.



<그림 12> 동력식 심압대 (가드는 필요치 않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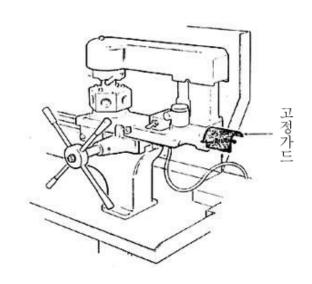
(2) 심압대를 페달식으로 조정하는 경우 <그림 13>과 같이 페달은 낙하물이나 기타 운동물 등으로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작동이 되지 않도록 방호되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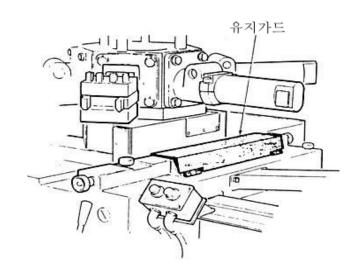
<그림 13> 페달스위치의 덮개

4.5 조정용 기구의 방호

트립 도그나 엔드스톱과 같은 조정용 기구가 그 성질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 <그림 14>, <그림 15>와 같이 고정가드나 유지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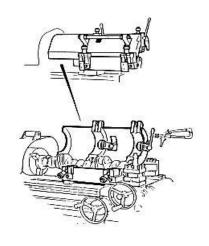
<그림 14> 고정가드에 의한 엔드스톱의 방호



<그림 15> 유지가드에 의한 고정기구의 방호

4.6 툴링이 제공되는 수동선반

(1) 제조자는 공작물의 크기나 형상 또는 툴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<그림 16>과 같이 별도의 가드를 설치한다.



<그림 16> 공작물 방호를 위한 유지가드

(2) 터릿선반 공구나 공구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선반의 기초평면 밖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 방호한다. <그림 8> 다만, 수동으로 이송 및 분할하거나 동력으로 분할하고 이송을 하며 공구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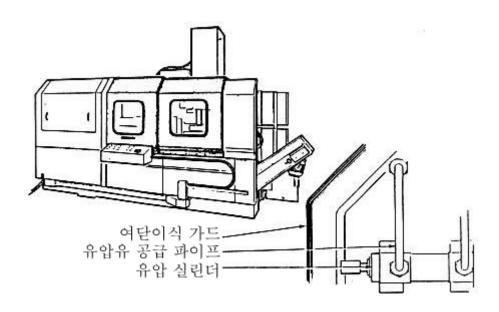
풀렸을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터릿선반은 선반의 뒷부분만 방호하여도 좋다.

5. 자동선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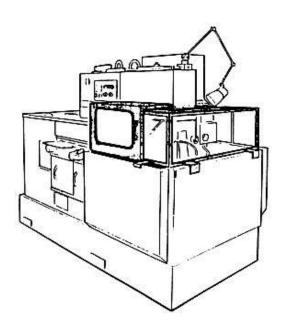
- 5.1 자동선반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
 - (1) 공작물 파지장치의 회전부 외측에 근로자가 접촉지 않도록 <그림 1>, <그림 2>과 같이 고정가드나 유지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2) 작업자가 위치를 정할 수 있거나 새들에 고정되어 공구와 같이 이동하면 서 작업점과 공작물 파지장치를 방호하는 연동가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의 공작물 파지장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5.2 자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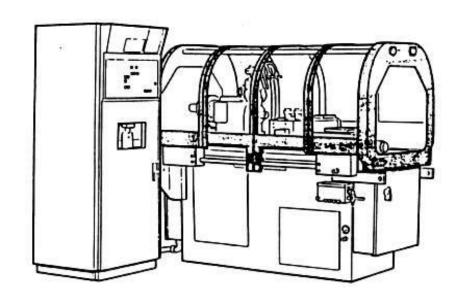
(1) 자동모드로 운전되는 동안에 선반의 운동과 공작이 위험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호되어야 한다. <그림 17> 내지 <그림 23>과 같이 가능하면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는 것이 좋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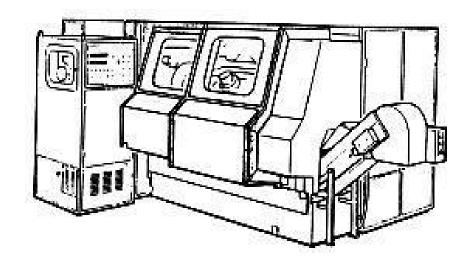
<그림 17> 고정가드 및 여닫이식 가드에 의한 공작영역 전체의 방호 (유압실린더에 부착된 숏볼트로 가공중 열리지 않도록 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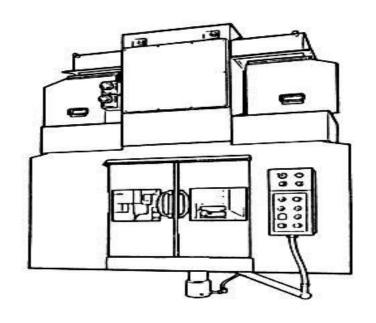
<그림 18> 자동선반의 공작영역 전체의 방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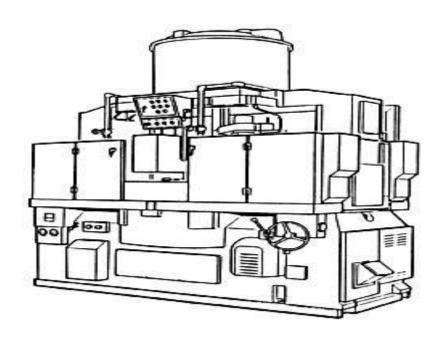
<그림 19> 선반의 운동에 연동된 여닫이식의 가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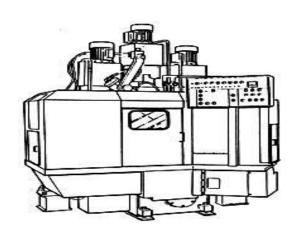
<그림 20> 선반의 운동에 연동된 여닫이식의 가드



<그림 21> 수직선반 (공작영역 전체의 방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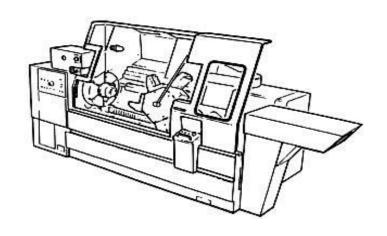
<그림 22> 수직다축선반 (공작영역 전체의 방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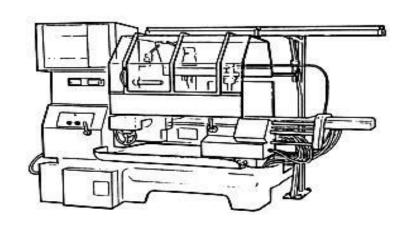
<그림 23> 수직선반 (공작영역 전체의 방호)

(2)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며 자동모드에서 공작물을 탈착하기 위하여 유지 가드가 열려야 하는 경우에 유지가드는 선반의 운전과 연동되어야 한다.

> (3) 공작영역 전부를 방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대용량의 선반 등에는 고정가드나 유지가드가 제공되어야 하며, 이때 유지가드는 <그림 24>, <그림 25>와 같이 왕복대에 고정되어 왕복대와 같이 움직이거나 기계에 고정되어 자체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작업자가 조정하여 공작물을 방호할 수 있거나, 자유롭게 서 있는 형태로 할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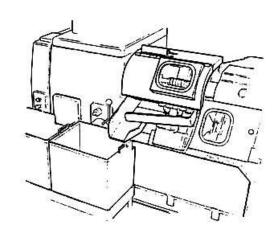
<그림 24> 공작영역 일부를 방호하며 작업자가 조정하는 여닫이식 유지가드



<그림 25> 자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를 위한 직립형 여닫이식 유지가드

5.3 툴링이 제공되는 자동선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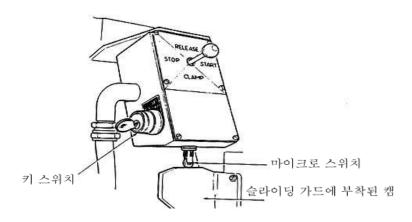
제조자는 공작물의 크기나 형상 또는 툴링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<그림 26>과 같이 별도의 가드를 설치한다.



<그림 26> 가공 및 공작물 방호를 위한 부가적인 유지가드

5.4 자동선반 조정시의 방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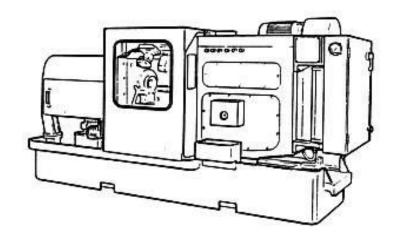
- (1) 선반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드를 제거하고 선반을 동작시켜야 하는 경우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조정작업자를 방호한다.
- (2) 조정작업은 어떤 특정한 가드를 제거하거나 무효화시키고 작업하여야 하 기 때문에 조정작업자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훈련된 사람이거나 이런 사 람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한다.
- (3) <그림 27>과 같이 키 스위치를 설치하여 이 스위치가 공작영역의 연동 가드의 인터록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



<그림 27> 키 스위치 우선의 공작영역 방호

5.5 다축자동선반의 공작영역 방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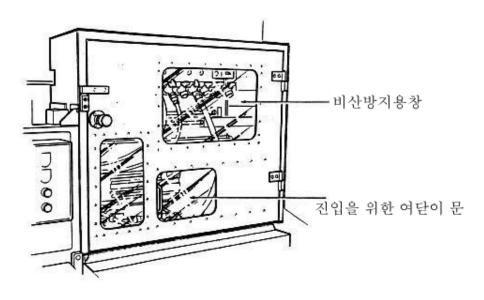
- (1) 수동으로 공작물 파지장치에 공작물을 넣어 주는 다축자동선반은 다음의 각호의 방법 중 하나로 방호한다.
 - (가) <그림 28>과 같이 미닫이 또는 여닫이의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가드를 제어시스템과 연동시켜 가드가 닫히지 않고는 공작물 탈착부위에서 주축의 분할이나 계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한다. 또한 주가드가 열 있을 때 공작영역내 다른 작업부위로부터 작업자를 방호하기 위하여 별개의 가드가 필요하다. 주축의 분할시 가드는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.



<그림 28> 다축자동선반 - 전공작영역의 연동가드

(나) <그림 29>와 같이 공작영역 전체를 방호하는 선반 제어시스템과 연동 시킨 가드를 설치하여 선반이 자동으로 작동할 때에는 가드를 열 수 없도록 한다.

이때 공작영역 내부의 공작물 탈착부위 가까이에는 미닫이나 여닫이식 으로 문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이 닫히기 전에는 주축의 분할 이나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.



<그림 29> 다축자동선반 - 공작영역의 연동가드

- (다) 양수조작식 스위치가 있어 자동모드 종료시 이 스위치 이외의 방법으로 주축의 분할이나 회전을 재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탈착부위 가까이에 감시창을 만들거나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을 연동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(2) 위 호의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작영역내의 다른 작업부위 로부터의 방호를 위하여 부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공작영역 내에 작업자가 공작물 탈착부위를 볼 수 있도록 감시창이나 미 닫이 또는 여닫이 문이 있을때 투명창에는 비상방지용 재질을 사용한다.
- (4) 선반이 공작물의 수동 탈착모드에 있을 때에는 선반이 한 사이클만 작동 가능하게 하여 작업자가 이를 매번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6. 부속장치

- (1) 칩처리 컨베이어, 유압장치, 심압대 이송장치 등 기타 선반의 부속장치가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기존의 가드에 의하여 방호되지 않을 때에 는 별도로 방호하여야 한다.
- (2) 공작물을 지니고 있는 장치는 공작물의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.
- (3) 선반작업과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장치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가져야 한다.